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지원 유형	지급 기준	비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가.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1. 가.의 경우 지원인원의 한도가 없음  1. 나.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 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가.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2. 가.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나.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구분</th> <th>연간총액</th> <th>3개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td> <td>960만원</td> <td>240만원</td> </tr> <tr> <td>중견기업</td> <td>480만원</td> <td>120만원</td> </tr> <tr> <td>대규모기업</td> <td>480만원</td> <td>12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2. 주근로시간 단축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법정근로시간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구분</th> <th colspan="2">신규채용</th> </tr> </thead> <tbody> <tr> <td>500인 초과</td> <td colspan="2">60만원, 1년</td> </tr> <tr> <td rowspan="2">300-500인</td> <td>제조업</td> <td>80만원, 2년</td> </tr> <tr> <td>비제조업</td> <td>60만원, 1년</td> </tr> <tr> <td rowspan="2">300인 미만</td> <td>제조업</td> <td>80만원, 2년</td> </tr> <tr> <td>비제조업</td> <td>80만원, 1년</td> </tr> </tbody> </table>	구분	신규채용		500인 초과	60만원, 1년		300-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6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80만원, 1년
구분	신규채용															
500인 초과	60만원, 1년															
300-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6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80만원, 1년														
②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급하며, 비제조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1년간 지급  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p>① 신규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인 이상 기업 (지원기간) 총 2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6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40만원 지원</li> <li>- 300인 미만 기업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업종은 최소 1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80만원 지원</li> </ul> <p>②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최소 1년간 지원</li> <li>-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li> </ul> <p>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1년간 지원(다만,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원)</li> <li>-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20인을 한도로 함</li> </ul>	<p>2. 나.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p> <p>2. 다.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2. 가. 및 2. 나.에 따른다.</p> <p>※ ‘24.1.1. 이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 (다만, ‘23.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 가능)</p>			
<p>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p>	<p>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p> <table border="1" data-bbox="411 2094 1038 2139">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간총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r> </table>	구분	연간총액	3개월	<p>※ ‘24.1.1. 이후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 (다만, ‘23.12.31. 이전</p>
구분	연간총액	3개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지급액</td> </tr>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td> <td>720만원</td> <td>180만원</td> </tr> <tr> <td>중견기업</td> <td>360만원</td> <td>90만원</td> </tr> </table>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18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90만원	<p>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 가능)</p>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18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90만원												
<p>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p>	<p>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6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구분</td> <td style="width: 33%;">연간총액</td> <td style="width: 33%;">6개월 지급액</td> </tr>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td> <td>960만원</td> <td>480만원</td> </tr> <tr> <td>중견기업</td> <td>480만원</td> <td>240만원</td> </tr> </table>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p>- '23.1.1. 이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참여 신청을 한 사업주부터 적용함</p> <p>※ '24.1.1.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 (다만, '23.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 가능)</p>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p>고용촉진장려금</p>	<p>「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구분</td> <td style="width: 33%;">연간 최대 지원금액</td> <td style="width: 33%;">6개월 지급액</td> </tr>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td> <td>720만원</td> <td>360만원</td> </tr> <tr> <td>중견기업</td> <td>720만원</td> <td>360만원</td> </tr> <tr> <td>대규모기업</td> <td>360만원</td> <td>180만원</td> </tr> </table> <p>*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례지원 대상자의 계속 고용기간에 대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6개월단위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중견기업 지원단가는 적용 제외)</p>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p>※ 중견기업: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p> <p>※ 대규모기업이면서 중견기업인 사업장은 중견기업 지원단가로 지급</p>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